[별지 제69호의9서식] <개정 2020. 3. 13.>

노후자동차 교체 환급(공제) 신청서

※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관리번호	처리기간 7일

신청인

①성명(대표자)		②주민(법인)등록번호	
③상호(법인명)			
④주소(본점 소재지)			
⑤제조(판매)장 소재지		⑥사업자등록번호	
⑦거래 은행	은행 지점	⑧계좌번호	

신청 내용

⑨품명	⑩수량	⑪단가	⑫차대번호 / ⑬수입신고번호	기납부 세액 ⑭개별소비세	기납부 세액 ⑮교육세	노후차 교체 감면후 세액 ⑯개별소비세	노후차 교체 감면후 세액 ⑰교육세

⑱환급·공제 여부	⑲개별소비세 환급(공제)액(⑭-⑯)	⑳교육세 환급(공제)액(⑮-⑰)	㉑합계액 (⑲+⑳)

㉒환급(공제)사유발생연월일		년 월 일			
환급(공제) 물품의 반출자	㉓성명(대표자)		환급(공제) 물품의 반입자	㉗성명(대표자)	
	㉔상호(법인명)			㉘상호(법인명)	
	㉕주소(본점소재지)			㉙주소(본점소재지)	
	㉖반출장소			㉚반입장소	

위와 같이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에 따라 위 금액을 환급(공제)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환급(공제)물품의 반출자 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또는 **세관장** 귀하

신청인 첨부서류	1. 판매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(승용자동차 구매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) 2. 노후자동차교체용차량확인서 3.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국내제조 승용자동차인 경우)	수수료 없 음
담당공무원 확인 사항	1. 수입신고필증 (수입신고한 승용자동차인 경우)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사업자등록번호: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작 성 방 법

1. "⑱ 환급·공제 여부"란에는 환급신청 시는 "환급", 공제신청 시는 "공제"라고 적습니다.
2. 노후자동차교체환급(공제) 신청기한: 신차의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교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청합니다. (다만, 수입신고되지 않은 국내제조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매 분기의 다음달 25일까지 개별소비세 신고·납부 시 함께 신청합니다.)
3.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세무서 및 세관에 이미 납부한 승용자동차만 신청합니다.
4.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환급(공제)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판매업자가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환급(공제)물품의 반출자의 인감날인을 받고, 세관장이 발급한 세금계산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 또는 중질지 80g/㎡]